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33
----------	------

2025. 9. 8.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8. 29. 박문섭 의원

나. 회부 일자: 2025. 8. 29. 회부

다. 상정 일자: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2025. 9. 8.) 상정,
“수정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세부 사업 (안 제4조~제5조)
-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및 협력체계 (안 제6조~제7조)
- 포상 및 시행규칙 (안 제8조~제9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관광진흥법」, 「동물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지역 내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칙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에는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기본계획 및 세부 사업(안 제4조~제5조),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및 협력체계(안 제6조~제7조),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을,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 하였음.
-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관광·산업 수요가 높아져, 관광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이나 조문 체계,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
- 다만, 향후 시설·안전·재정 관련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수정의결**(출석위원 6명)

※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수정안 참고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 붙임 1.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333-1
----------	--------

제안연월일 : 2025. 9. 8.

제안자 : 총무위원장

1. 수정 이유

-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세부 사업 중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항목을 삭제함.

2. 수정 내용

- 안 제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수정함.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세부 사업) ① 시장은 반려 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u>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u></p> <p><u>8. ~ 10.</u> (생 략)</p> <p>② (생 략)</p>	<p>제5조(세부 사업) ①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7. ~ 9.</u> (현행 제8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정안+수정안)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이동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말한다.
4. “펫티켓”이란 반려동물과 여행 시 반려인 및 일반 시민이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에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 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 ~~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87.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조성·정비·확충
98.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및 펫티켓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10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①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

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지정하고, 해당 관광지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